



"고객의 행복과 함께하는 명품농협손해보험"
직인생략

NH농협손해보험



수신 : 수신처참조

(경유)

제목 :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 유의사항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사고조사 수임 건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배경

□ 보험업법 제189조(손해사정사의 의무 등) 개정

-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등에게 손해사정서 교부·설명 의무 부여
-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및 합의 요구 행위 금지

【보험업법】

제189조(손해사정사의 의무 등)

-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,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. (개정 2018.8.22.)
- ② (생략)
-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,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~ 5. 생략
 6.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(개정 2018.8.22.)
 7. 생략

2. 유의사항

□ 손해사정서 교부·설명 의무

- 교부의무자 : 손해사정(업)자
- 교부대상자
 - ① 보험회사
 - ②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 (피해자, 보험수익자)

□ 손해사정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
- 피보험자(피해자)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함.
- 피보험자(피해자)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함.
- 보험사기, 민원 성향 등 고객 오해를 야기할 만한 내용 제외
- 손해사정보고서상 「붙임자료」는 교부대상에서 제외
 - ※ 고객요청 시 보험사에서 별도 응대(사본교부, 열람 등)

3. 기타

□ 보험금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 및 합의 요구행위 금지

-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변협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발 조치 예정임을 통보함.

지 급 심 사 단 장

수신자 : 고려, 리카운, 리더스, 인코크, 김스코, 현대하이카, 국제, 다스카, 대영, 대양, 미래, 동북아, 보람, 서울, 서진, 세계, 세종, 솔로몬, 이앤에스, 에스원, 에이원, 유니온, 중앙, 코마, 카스코, 케이엠, 한국, 해성, 탑, 태양, 태평양, 티앤지, 프라임, 파란, 유월비, 에이플러스, 해오름, 캣코

시행 : 손해(지급심사단)62105 - 182

접수 :

우 120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0 (미근동), KT&G서대문타워 6층 / 전화 02-3786-8086

/ FAX 0505-060-4068

담당 : 차장 김태우 (E-mail :)

/ 공개구분 : 부서공유